

의안번호	2220647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6.09.28.
추 계 번호	26G4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1,782억원 등 2027~2030년 4년간 총 4조 1,596억원(연평균 1조 3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 11,782	-13,866	- 13,598	-2,350	-41,596	- 10,399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3년 연장(안 제66조)	-	-390	-408	-427	-1225	-40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3년 연장(안 제68조)	-	-248	-260	-272	-779	-260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	-75	-79	-83	-236	-79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11,218	-12,521	-12,220	-1,500	-37,460	-9,36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2항)	-495	-562	-559	-68	-1,684	-421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69	-70	-72	-	-211	-70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2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3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3호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4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5	안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2호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6	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항	- 농협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2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3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3호	○	-
4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호	○	-
5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제1항제2호	○	-
6	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항	○	-
7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3호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공급가액 정보 부재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

□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

- 징수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2022~2026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68조)

□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

- 징수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2022~2026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다.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 최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실적 및 증감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라.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¹⁾,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을 추세를 활용

[표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세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71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886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전체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을 추세를 활용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바.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1) 최근 유류세 인하: ('18.11.6.~'19.5.6.) 15% 인하 → ('19.5.7.~8.31.) 7% 인하 → ('21.11.12.~'22.4.30.) 20% 인하 → ('22.5.1.~6.30.) 30% 인하 → ('22.7.1.~12.31.) 37% 인하 → ('23.1.1.~'24.6.30.) 경유 37%, 휘발유 25% 인하 → ('24.7.1.~10.31.) 경유 30%, 휘발유 20% 인하 → ('24.11.1.~'25.4.30.) 경유 23%, 휘발유 15% 인하 → ('25.5.1.~10.31.) 경유 15%, 휘발유 10% 인하 → ('25.11.1.~'26.3.26.) 경유 10%, 휘발유 7% 인하 → ('26.3.27.~7.31.) 경유 25%, 휘발유 15% 인하 등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및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해 농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5%의 저율과세 적용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지 및 초지 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2년 379억원에서 2026년 481억원(잠정치)으로 변동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 2022~2026년(잠정)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잠정)	기간 평균
계	379	342	350	396	481	389.6
－ 소득세	169	161	186	200	275	198.2
－ 법인세	210	181	164	196	206	191.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이 경상GDP 성장률(전망)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2~2026년)의

연평균 감면액(389.6억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2022~2026년간 연평균 감면액: 소득세 198.2억원, 법인세 191.4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8~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계	389.6	408.2	427.0
－ 소득세	198.2	207.7	217.2
－ 법인세	191.4	200.5	209.8

(3) 추계결과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89.6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1,168.8억원(연평균 38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의 세수효과: 2028~2030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68조)	-389.6	-408.2	-427.0	-1,224.9	-408.3

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68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 및 거주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이 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지 및 초지 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 대하여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면제,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배제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2년 278억원에서 2026년 264억원(잠정치)으로 변동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2~202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5]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 2022~2026년(잠정)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잠정)	기간 평균
계	278	240	224	231	266	247.8
- 소득세	5	5	4	4	2	4.0
- 법인세	272	235	220	227	264	243.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이 경상GDP 성장률(전망)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2~2026년)의 연평균 감면액(247.8억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2022~2026년간 연평균 감면액: 소득세 4.0억원, 법인세 243.6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8~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계	247.8	259.6	271.6
- 소득세	4.0	4.2	4.4
- 법인세	243.6	255.2	267.0

(3) 추계결과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247.8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779.1억원(연평균 25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의 세수효과: 2028~2030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	-247.8	-259.6	-271.6	-779.1	-259.7

다.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1) 제도 개요 및 실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 개선 목적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²⁾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위탁영농)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축산물 사육 대행을 하는 법인의 활동(농작업의 100% 위탁)
- (농작물대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100% 미만)인 논밭 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은 2020년 1,814억원에서 2023년 2,094억원, 2024년 3,198억원으로 증가³⁾

- 최근(2020~2023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4.9% 수준
 - 전년대비 증가율이 50%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 보고서」(2023년 기준), 2025.5

3) 면세사업자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동 제도에 따르는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음

[표 11]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²⁾ (2020~2023)
위탁영농·농작물대행 매출액 ¹⁾	1,814	1,518	2,000	2,094	3,198	4.9%
(전년대비 증감률)	-	(-16.3)	(31.8)	(4.7)	(52.7)	-

주: 1) 「농업법인조사」(농림축산식품부)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이 50%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매출액 × 관련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로 추계

-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은 최근 (2020~20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추세(4.9%)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20.31%)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농업’[A01]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

[표 12]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 2022~2024년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농업	20.49	18.96	21.49	20.31

자료: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7년 75억원 등 2027~2029년 총 236억원(연평균 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76억원(연평균 5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60억원(연평균 20억원) 감소 예상됨

[표 1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75	-79	-83	-236	-79
- 부가가치세(74.7%)	-56	-59	-62	-176	-59
- 지방소비세(25.3%)	-19	-20	-21	-60	-20

라.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 추계방법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14]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천ton,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휘발유	202	201	194	189	191	190	-1.2
경유	1,855	1,767	1,667	1,663	1,626	1,621	-2.7
중유	43	38	34	21	21	23	-11.7
윤활유	8	8	7	7	7	7	-3.4
LPG부탄	0.4	1	1	1	1	2	43.6
LPG프로판	14	16	17	16	17	19	6.1
등유	443	440	423	350	341	365	-3.8

주: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개별소비세율 동일)를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제공 자료(2026년 6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표 15]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휘발유	529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세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등 ³⁾)×10%
경유	375원/L ¹⁾	—			
등유	—	63원/L ¹⁾	B×15%	—	
중유	—	17원/L		—	
윤활유	—	— ²⁾	—	—	
LPG부탄	—	275원/kg ¹⁾	B×15%	—	
LPG프로판	—	14원/kg ¹⁾	—	—	

주: 1) 현행 제도에 따라 추계기간 적용될 예정인 세율(탄력세율)을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휘발유·경유·등유·중유의 경우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부탄(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 판매부과금 62.28원/kg, 프로판(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을 반영

□ 부가가치세 추계 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⁴⁾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16]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원/kg)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휘발유	397	638	980	837	816	763	739
경유	432	655	1,186	951	900	866	83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LPG부탄	614	836	1,161	953	1,010	1,029	934
LPG프로판	588	803	1,119	947	971	990	903
등유	411	599	1,022	917	870	841	777

주: 유종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일반용 부탄 및 일반용 프로판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감률(2020~2025년, 비용추계 전제 참고)을 반영하여 추정

4)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8년) 69.66 ('19년) 63.53 ('20년) 42.29 ('21년) 69.41 ('22년) 96.41 ('23년) 82.10 ('24년) 79.58 ('25년) 69.36 ('26년 9월) 115.23

[표 17]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29년

(단위: 천kl, 천ton)

유종	2026	2027	2028	2029
휘발유	188	185	183	181
경유	1,578	1,536	1,495	1,455
중유	21	18	16	14
윤활유	7	7	6	6
LPG부탄	3	5	7	10
LPG프로판	20	21	23	24
등유	352	338	326	313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times$ 세율(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times$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등유, 중유, LPG부탄 및 프로판 사용량 추계
 $\times$ 세율(등유 63원/L, 중유 17원/L, 부탄 275원/kg, 프로판 14원/kg)
 $\times$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0.996, 개별소비세 0.999)

[표 18]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교통·에너지·환경세	6,715	6,550	6,390
개별소비세	232	229	230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⁵⁾) $\times$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19]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교육세	1,042	1,016	992
자동차세(주행분)	1,746	1,703	1,661

(다) 부가가치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⁶⁾ × 10% × 조정계수*
 - 휘발유,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주행분+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등유, 중유, LPG부탄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등)×유종별 사용량 추계
 - LPG프로판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품질검사수수료 등)×사용량 추계
-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14) 적용

[표 20]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부가가치세	3,060	2,983	2,910

(라) 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218억원 등 2027~2030년 4년간 총 3조 7,460억원(연평균 9,365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5)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6)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2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6,155	-6,564	-6,403	-532	-19,655	-4,914
- 개별소비세	-213	-230	-230	-19	-691	-173
- 교육세	-955	-1,019	-994	-83	-3,050	-763
- 자동차세(지방세)	-1,600	-1,707	-1,665	-138	-5,110	-1,278
- 부가 가치세	국세(74.7%)	-1,714	-2,243	-2,188	-543	-6,688
	지방소비세 (25.3%)	-581	-760	-741	-184	-2,265
전체	-11,218	-12,521	-12,220	-1,500	-37,460	-9,365

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가) 추계방법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2025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2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75	-0.2
중유	50	55	55	54	46	43	-3.0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23]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경유	375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 제세부담금 + 품질검사수수료 ³⁾) ×10%
중유	—	17원/L	B×15%	—	
윤활유 ²⁾	—	—	—	—	

주: 1)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L를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24]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경유(선박용)	416	581	1,090	914	857	813	779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5년)을 반영하여 추정

[표 2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29년

(단위: 천kl)

유종	2026	2027	2028	2029
경유	75	75	75	75
중유	42	40	39	38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중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17원/L)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083, 개별소비세 0.822)

[표 2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교통·에너지·환경세	304	303	303
개별소비세	6	5	5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27]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교육세	46	46	46
자동차세(주행분)	79	79	79

(다) 부가가치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⁷⁾ × 10% × 조정계수*
 -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품질검사수수료)×
경유 공급량 추계
 -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중유 공급량 추계
-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028) 적용

[표 2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부가가치세	128	127	126

(라) 추계 결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495억원 등 2027~2030년 4년간 총 1,684억원(연평균 546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7)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2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279	-304	-303	-25	-910	-228
- 개별소비세		-5	-5	-5	-0.4	-16	-4
- 교육세		-43	-46	-46	-4	-139	-35
- 자동차세(지방세)		-72	-79	-79	-7	-237	-59
- 부가 가치세	국세(74.7%)	-72	-95	-94	-24	-285	-71
	지방소비세 (25.3%)	-24	-32	-32	-8	-96	-24
전체		-495	-562	-559	-68	-1,684	-421

바.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1) 추계방법

-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액은 2022년 60억원에서 2025년 65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표 30]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 2022~2025년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부가가치세 감면액	60	69	70	65	2.7

자료: 재정경제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결과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69억원 등 2027~2029년 3년 간 총 211억원(연평균 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2.7%)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제

[표 31]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69	-70	-72	-211	-70
- 국세(74.7%)	-51	-53	-54	-158	-53
- 지방소비세(25.3%)	-17	-18	-18	-53	-1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